

최종보고

#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 실태조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헌희

# 차례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II. 실태조사 : 1차, 2차 3차(사례) 설문조사

III. 법제도 개선방안 – 아이디어탈취 가이드라인 검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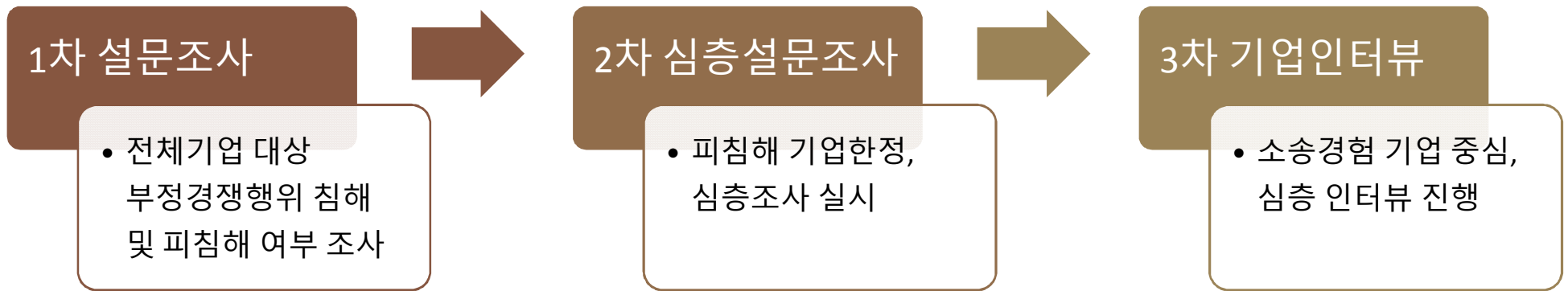
## 연구의 필요성

- 실물경제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
-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진단 및 평가 결과 제공 필요

## 연구의 목표

-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산업별·유형별 침해현황을 파악하여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책을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자료 생성
- 부정경쟁행위 침해실태를 기초로 우리 기업의 침해방지 정책지원을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강화에 기여

# 부정경쟁행위 피해 설문조사 추진



- 1차 설문조사 : 전체 기업 중 표본 추출(6,000개)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침해 조사
- 2차 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 관련 피침해 경험이 있는 기업 및
  - 소송 및 조사 대상 기업 185개 기업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침해 형태, 침해에 대한 대응여부 등 파악
- 3차 인터뷰 : 2차 설문 대상 중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대표성을 띄는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의 구체적 과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

# 단계별 설문조사의 구조

<p><b>1차 설문</b> (온라인 조사)</p>	<p>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이해 (인식 조사 1차/2차, 피해신고 절차 인지 여부)</p> <hr/> <p>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경험 조사 - 침해 / 피침해 여부 조사 → <b>피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 2차 설문 실시</b></p> <p>약 390만개 기업 중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피해경험 여부 확인</p>
<p><b>2차 심층설문</b> (이메일 조사)</p>	<p>기업일반현황 (종사자수, 기업유형, 업종)</p> <hr/> <p>피해 경험 조사 (11개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예 : 11개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피침해 여부 및 피해 횟수</p> <hr/> <p>침해에 대한 대응 (<b>대표적 3건의 사례에 대해</b>)      예 : 가해 주체, 피해 형태, 피침해 시점, 피침해 인지 경로, 대응 방법, 피해 규모, 대응 비용, 보상 수준 등</p> <hr/> <p>제도, 정책, 기업의견 등      예 : 대응 시 애로사항,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p>
<p><b>3차 인터뷰</b> (방문 조사)</p>	<p>피해경험에 대한 구체적 침해과정 및 대응에 대한 심층 인터뷰</p>

# 1차 설문조사 추진 경과

---

- 1차 설문지 확정 (~10/1)
- 1차 조사 대상 표본 6,000개 추출 (~10/17)
- 조사업체 계약 (10/18)
- 조사원 교육 (10/23~24, 15명 대상)
- 1차 조사 대상 업체 컨택 및 1차 조사 실시 (10/26~12/14)
  - 휴폐업/부재/결번 여부 확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 설문 시행 경과
  - 유효표본 3,643건 중 1,551건 회수(회수율 42.6%)

# 1차 설문조사 결과 : 응답 표본

		유효표본	구분	1 ~ 9명 미만		10 ~ 49명 미만		50 ~ 299명 미만		300명 이상	
			사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3,643	(1551)	(753)	48.5	(632)	40.7	(149)	9.6	(17)	1.1
업종	① 농림 수산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91	(43)	(19)	2.5	(2)	3.2	(4)	2.7	(0)	-
	② 도매 및 소매업	759	(290)	(194)	25.8	(86)	13.6	(9)	6.0	(1)	5.9
	③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472	(214)	(92)	12.2	(87)	13.8	(30)	20.1	(5)	29.4
	④ 건설업	548	(227)	(127)	16.9	(91)	14.4	(9)	6.0	(0)	-
	⑤ 기타 서비스업	538	(215)	(101)	13.4	(80)	12.7	(26)	17.4	(8)	47.1
	⑥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업	87	(32)	(15)	2.0	(14)	2.2	(3)	2.0	(0)	-
	⑦ 화학 산업	154	(67)	(23)	3.1	(34)	5.4	(9)	6.0	(0)	-
	⑧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산업	251	(108)	(37)	4.9	(62)	9.8	(9)	6.0	(0)	-
	⑨ 전기전자산업	73	(32)	(8)	1.1	(15)	2.4	(9)	6.0	(0)	-
	⑩ 기계산업	524	(258)	(97)	12.9	(119)	18.8	(40)	26.8	(2)	11.8
	⑪ 기타제조업	146	(65)	(40)	5.3	(24)	3.8	(1)	0.7	(0)	0.0

# 1차 설문조사 결과 : 요약

## ◦ 부정경쟁행위 관련 인식도 및 분쟁 경험

문항	응답	n/N
1. (1차 인식 조사) 귀사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22.9%)	355/1,551
2. (2차 인식 조사)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시제품 모양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안,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등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고 있는 행위와 일치합니까?	① 예 (57.6%)	893/1,551
3. (분쟁 경험) 귀사는 위와 같은 행위 관련하여 최근 5년간('13년 이후) 분쟁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0.8%) (☞ 세부질문)	12/1,551
[① 분쟁 경험 유경험자만 답변] 3-1. 귀사는 최근 5년간 타인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를 침해했다는 주장, 소송 또는 특허청 조사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41.7%)	5/12
[① 분쟁 경험 유경험자만 답변] 3-2. 귀사는 최근 5년간 타인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91.7%) (☞ 세부질문)	11/12
[① 부정경쟁행위 피침해 경험자만 답변] 3-2-1.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중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72.7%)	8/11
[① 부정경쟁행위 피침해 경험자만 답변] 3-2-2.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0/11
4. (피해 신고) 귀사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을 통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가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까?	① 예 (21.7%)	336/1,551



# 2차 설문조사 진행 현황

---

- 2차 조사 대상 업체 검색(~10/26)
  - 가처분 소송 기업 30개, 민사소송 기업 140개, 특허청 조사기업 15개 총 185개
  - 1차 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 피침해 기업 6건(2차 조사에 강한 거절 의사 표명, 계속 업데이트 예정)
- 2차 설문지 확정 (11/9)
- 조사원 교육 (11/13~14, 10명)
- 2차 조사 대상 업체 컨택 및 2차 조사 실시 (11/10~, 이메일 조사)
  - 휴폐업/부재/결번 여부 확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 설문 시행 경과 (12.14. 기준)
  - 35건 회수 중 부정경쟁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례는 16건

## 2차 설문조사 결과 : 1. 응답 현황

◦ 기업 유형별 x 종사자 규모별 응답 현황

		구분	1 ~ 9명 미만		10 ~ 49명 미만		50 ~ 299명 미만		300명 이상	
		사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35)	(10)	28.6	(17)	48.6	(5)	14.3	(3)	8.6
기업 유형	대기업	(1)	(0)	0.0	(0)	0.0	(0)	0.0	(1)	100.0
	중견기업	(4)	(0)	0.0	(0)	0.0	(3)	75.0	(1)	25.0
	중소기업	(25)	(8)	32.0	(15)	60.0	(1)	4.0	(1)	4.0
	벤처/Inno-biz	(1)	(0)	0.0	(1)	100.0	(0)	0.0	(0)	0.0
	기타	(4)	(2)	50.0	(1)	25.0	(1)	25.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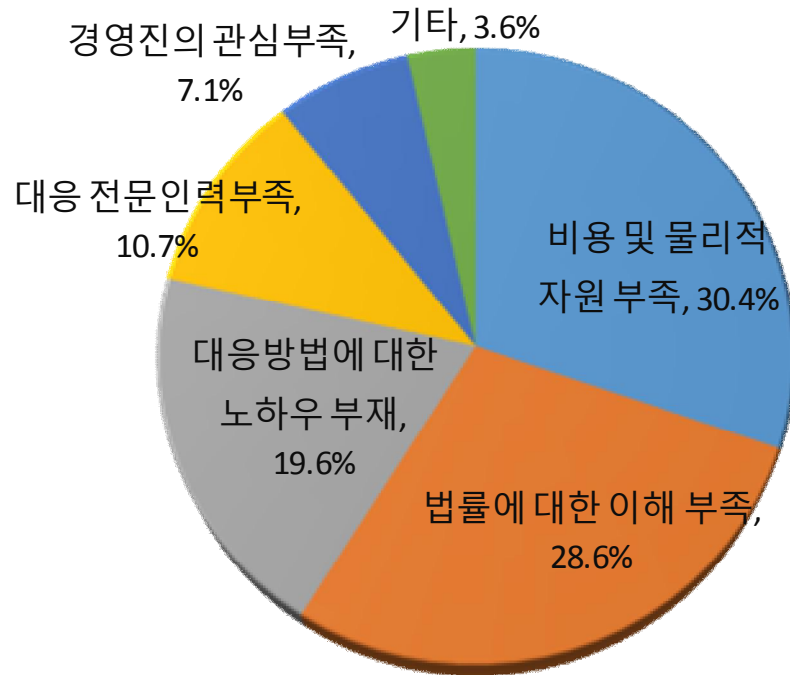
## 2차 설문조사 결과: II.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피해

◦ 부정경쟁행위 관련 피해 경험 유무 및 횟수 : 6개 유형에 대한 총 16건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문항	피해 경험有	피해 횟수
1. 상품주체 혼동	1	1
2. 영업주체 혼동	0	-
3. 유명상표의 식별력, 명성 손상	3	2
4. 원산지 허위 표시	0	-
5.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0	-
6. 상품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0	-
7. 상표권자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	3	3
8. 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	0	0
9. 타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	3	6
10. 타인의 기술적, 영업상 아이디어 탈취	3	1
11. 타인의 상당한 투자,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	4	3

## 2차 설문조사 결과: III. 정책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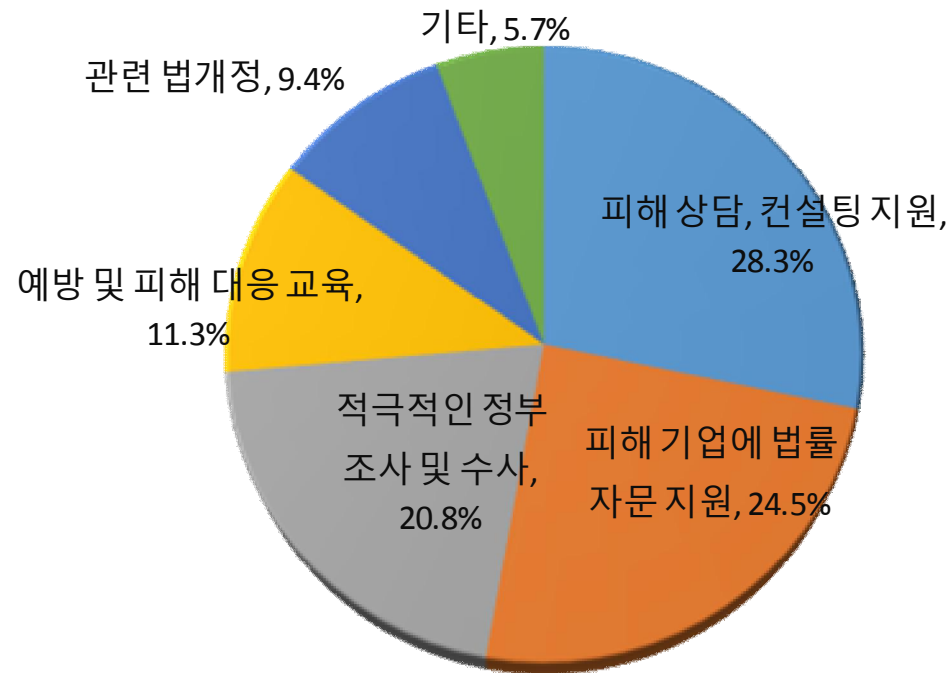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의 예방, 대응 시 겪는 애로사항 (복수응답 포함 56건)



- ✓ 비용 및 물리적 자원 부족 (17건, 30.4%)
- ✓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16건, 28.6%)
- ✓ 대응방법 노하우 부재 (11건, 19.6%)

## 2차 설문조사 결과: III. 정책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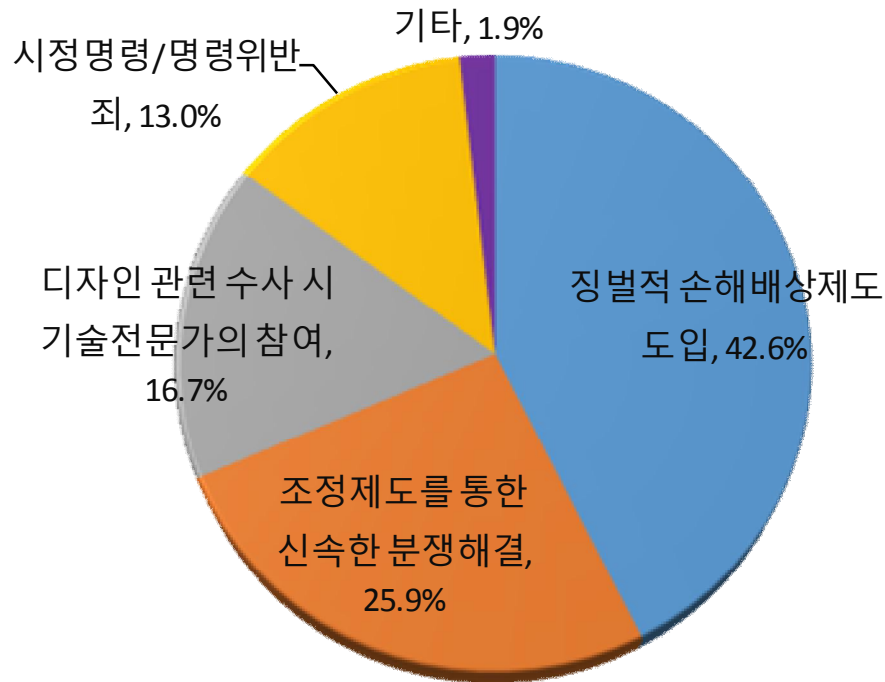
-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피해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제도 요청 사항 (복수응답 포함 53건)



- ✓ 피해 상담 및 컨설팅 지원 (15건, 28.3%)
- ✓ 피해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13건, 24.5%)
- ✓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 및 수사 (11건, 20.8%)

## 2차 설문조사 결과: III. 정책 및 제도개선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의 근절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 (복수응답 포함 54건)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3건, 42.6%)
- 조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14건, 25.9%)
-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 수사 시 기술전문가의 수사 참여 (9건, 16.7%)

# 3차 심층설문 개요

---

## 설문 목적

- 실제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부정경쟁행위 각 유형별 대표사례 발굴하여 침해예방 및 대응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침해를 경험한 기업의 담당자에게 전문가자문을 통해 사례파악
  - 제안서 등 관련자료 유출이 많은 설문조사업체
  - 상품형태모방 경험이 있는 의류유통
  - 우리나라 대표상품인 인삼 관련 업체
  -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영업점 외관을 사용하는 경우

# 리서치 업체의 유출사례

---

리서치 업체에 근무하던 자가 퇴사하여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한 후 자신이 작성했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안서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반사

- 제안서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업설문데이터 및 연락처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퇴사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
- 특히 제안서가 동일하다거나 유사한지는 제안서를 받고 평가하는 업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유출당한 업체에서 해당 내용이 유출되었는지, 경쟁업체에서 자기들의 자료를 활용하였는지는 심증만 있을 뿐 실증이 없는 것이 현실
- 이에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대응 내지는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상황 지속



# 의류관련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목

2012.7.24. 자 2012카합2460

- 주식회사 지앤코 v. 신세계 인터내셔널
- 신청인은 쉐스데이 아일랜드 브랜드 보유, 2010.10.9. 부터 의류를 개발하여 2011년 여름경 제1의류제품을 판매
- 피신청인은 2012.5. 경부터 제2의류제품 판매

제1의류제품



제2의류제품



# 의류관련 사건

---

- 제1의류와 제2의 의류는 다음의 점에서 유사함
  - 양자 모두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그 자수의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함
  - 양자의 소매는 그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고, 그 끝이 모두 레이스로 이루어짐
  - 양자의 목 부분은 모두 레이스로 된 터널 안에 ‘스트링(끈)’이 들어가 있고, 그 스트링 중 외부로 나온 양쪽 끝은 서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제1의류와 제2의류는 다음의 점에서 차이점
  - 제1의류의 총기장(목에서 허리까지) 및 옆기장(겨드랑이부터 옆구리까지)의 길이가 이 사건 제2의류제품의 초기장 및 옆기장의 길이보다 작음
  - 자수의 색을 비교하면, 이 사건 제1의류제품은 회색바탕의 의류제품에서는 자수의 색이 파란색이고, 파란색의 의류제품에서는 자수의 색이 아이보리인데 반해, 제2의류제품은 흰색바탕의 의류제품에서는 자수의 색이 아이보리색이고, 파란색 바탕의 의류제품에서는 자수의 색이 흰색임
  - 제2의류제품의 자수의 크기가 제2의류제품의 자수보다 약간 큼
  - 제2의류제품의 목 부분의 스트링 끝단에는 술이 있으나, 제2의 의류제품의 스티링 끝단에는 술이 없음
  - 제1의류제품의 소매 레이스는 두겹이며 파도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제2의류제품의 소매레이스는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뾰족한 성탑 모양을 하고 있음
  - 양자를 중심선을 따라 대칭이 되도록 반으로 쪼개서 비교하면, 제1의류제품은 소매 끝단이 중심선의 끝단보다 더 짧으나 제2의류제품은 소매 아래 끝단이 중심선의 끝단보다 더 김

# 의류관련 사건

---

- 법원의 판단

- 객관적 요건 : 실질적 동일 인정

- 제1의류제품과 제2의류제품의 독자적인 형태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들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유사하다 판단
    - 반면, 제2의류제품과 제2의류제품의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부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적 요건 : 의거

- 제1의류제품과 제2의류제품의 실질적 동일을 기초로,
    - 제1제품이 출시된지 1년 후 제2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제2의류제품에 접근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을 기초로 제1형태에 의거하여 제2의류제품이 제작 판매되었다고 추정

# 포천영농조합 v. KT&G

---

## 포천영농조합과 KT&G 사건

### 사건의 경위

- 2014년 가을 짬 재활용쓰레기장에서 우연히 포천인삼영농조합의 제품에서 한국인삼공사(KGC)의 정관장엠블렘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침해 인지
- 2014년 10월 : 온오프라인으로 상표침해 현황 조사
- 2014년 11월 : 경고장 발송
- 2014년 11월 ~ 12월 : 협상진행(5차례), 결렬
  - 침해인정
  - 침해품 폐기 : KGC는 전량 폐기, v.포천인삼영농조합은 침해시티커 제거
  - 손해배상 : KGC 1억원 v. 포천인삼영농조합 5천만원
- 2015년 5월 민형사대응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상표권 침해죄 고소)

# 포천 영농조합 v. KT&G

---

## 민사소송

- 2015년 5월 ~ 2016년 4월 : 민사1심
  - KGC 손해배상 2억 5천만원 청구, 합의부에서 합의 중용, 강제조정, 조정결과 손해배상금액 7천5백만원
  - 원피고 불복하여 본안 재개, 침해인정으로 손해배상 2,500만원
- 2016년 5월 원피고 불복항소(특허법원)
  - KGC 손해배상 2억 5천 청구, 재판부는 부경법 가목, 나목 청구취지 변경 요청, 재판부 화해 및 조정요청(강제조정)
  - 조정결과 손해배상 1억 5천만원, 원피고 불복, 손해배상 2억원 판결
- 2017년 10월 ~ 2017년 2월 피고불복으로 대법원
  - 심리불속행 각하, 종결

## 형사소송

- 1심 : 벌금 1,500만원, 2심 :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포천 영농조합 v. KT&G

---

## 대응의 어려운 점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의 인정문제
  -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손해배상산정에 소극적이며, 조정을 종용하여 사건 해결 노력
  - 특허법원의 경우 29/30류 제품에 대해 손해를 인정해주어 손해액인정

# 특허청 아이디어보호 가이드라인

---

차목의 경우 아이디어의 부정확한 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호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정상적이고 위법하지 않은 절차에서 이루어진다'는 차별점에 대한 설명 필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 기술적 아이디어와 영업상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필요
- 부경법의 보호객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고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

아이디어 제공 목적에 위반할 것

- 설명 부재, 128면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했지만 탈락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임

# 특허청 아이디어보호 가이드라인

---

## 영업상 이익을 위반하여

- 타인의 아이디어를 :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구분 가능

## Q&A 순서

- 아이디어 보호 규정의 도입취지, 탈취의 예에 대한 Q&A를 먼저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가이드라인의 제공여부

-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며, 대상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비교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교표 등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Q&A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필요 있어 보임
- 미국 사례, 영업비밀 혹은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해당 사례들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내지는 명시 필요



# 추진 일정

	연구추진일정(월)				
	8	9	10	11	12
계약 및 착수보고	계약 : 8.30	착수보고 : 9.14			
설문내용 검토 및 확정		설문 및 표본설계 설문문항 검토	설문확정 : 10.1 표본추출 : 10.17		
설문조사업체 선정		공고	설문업체계약 : 10.18		
1차 설문조사 실시			조사원교육 : 10.23~24 조사실시 : 10.26~		조사마감 : 12.14
2차 설문조사 실시			대상업체검색 : ~10.26	2차 설문지 확정 : 11.9 조사원교육 : 11.13~14	조사마감 : 12.14
법제도 개선방안도출				주요쟁점도출 및 연구	쟁점연구
3차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업 및 설문확정	12월 중
결론도출 및 정리					12월 중
연구진도	5%		60%		100%
중간 보고				11.27	
최종 보고					최종보고 : 12.19~21 계약마감 : 12.29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